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찰을 위한 특진 의료기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15. ~ 5. 26.) 결과, 주요 조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중요 수정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함에 따라 재입법예고(2026. 6. 8. ~ 6. 15.) 예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① 공단은 제34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의학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의학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업무상 질병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학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제1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공단이 정하는 인력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제121조 중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를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12까지, 제84조, 제85조”로 한다.

제121조의4제1항 전단 중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를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로,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를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21조 및 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4조의2(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① 공단은 제34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의학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의학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u> <u>1.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u> <u>2. 업무상 질병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학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u>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

<삭 제>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 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
급여 지급 등) 법 제123조에 따
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
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
보험 의료기관 중 공단이 정
하는 인력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의료
기관(별표 3 제7호차목에 따
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
1호가목에 따른 의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
3호가목에 따른 병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
급여 지급 등) -----

-----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
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
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
76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
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123조의 2제2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u>제55조부터 제69조까지</u>, 제72조, 제72조의2, <u>제73조부터 제77조까지</u>,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주”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으로 본다. ② (생략)	<u>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12까지</u>, <u>제84조, 제85조</u>----- -----.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① ----- ----- ----- ----- ----- <u>제55조</u> <u>부터 제66조까지</u>,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 <u>제73조부터 제76조까지</u>-----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46